

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

[시행 2026.10.08]
(제정) 2026.10.08 조례 제2427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도로건설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666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픽시 자전거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자전거 중 앞바퀴와 뒷바퀴의 제동장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.
2. “미성년자”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미성년자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에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픽시 자전거 이용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지도·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시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(性別)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사고 예방 사업)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및 위험성 교육·홍보
2. 제동장치 부착 등 올바른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 교육 및 안전한 운행 방법
3. 각급 학교와 연계한 학생 대상 픽시 자전거의 안전교육
4. 그 밖에 시장이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운전자의 준수사항) 픽시 자전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과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경기도, 파주경찰서, 파주교육지원청, 법인·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6. 10. 8. 조례 제242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